

대학원 학칙시행내규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시행세칙은 대신대학교 대학원 통합학칙에 의거 일반대학원(이하“대학원”)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통합 학칙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학과별 전공 및 입학전형

제2조 (학과별 전공) ①본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에 다음과 같은 학과 및 전공을 둔다.

1. 신학과(신학석사학위 Th.M.) : 구약신학, 신약신학, 조직신학, 역사신학, 실천신학.
“삭제”(개정2013.3.1., 개정 2022.2.1.)

2. (삭제)<2010.9.1.>

3. 사회복지학과(문학석사 학위 M.A.) : 사회복지방법, 사회복지정책

4. 영어영문학과(문학석사 학위 M.A.) : 영문학, 영어학

5. 음악학과(음악학석사 학위 M.Mus.) : 성악, 피아노, 오르간, 관악(개정 2018.8.1.)

②본 대학원의 박사학위과정에 다음과 같은 학과 및 전공을 둔다.(신설 2010.9.1.)

1. 신학과(철학박사학위 Ph.D.) : 구약신학, 신약신학, 역사신학, 조직신학, 실천신학(개정 2022.2.1.)

제3조 (제출서류) 각 대학원 각 학위과정의 입학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소정의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9.1.)

1. 입학원서(소정양식) 1부, 사진 3매

2. 대학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부

3. 대학 전 학년 성적증명서 1부(백분율 환산점수 기재)

4. 신학대학원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부(신학과 지원자에 한함)

5. 신학대학원 성적증명서 1부(신학과 지원자에 한함)

6. 위 명시된 지원구비서류 이외의 추가 서류는 각 대학원에서 정할 수 있다.(개정 2010.9.1.)

제4조 (전형방법) 대학원 입학은 위한 전형방법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정원 외)으로 구분하여 전형한다.

1. 일반전형 : 서류전형, 면접고사, 실기고사(예능계에 한함)로 전형을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필기고사(영어 및 전공)를 부가하여 성적에 반영 할 수 있다.(개정 2010.9.1.)

2. 특별전형 : 일반전형과 동일하며, 세부사항은 대학원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5조 (편입학) 대학원의 편입학은 허가하지 아니한다.

제6조 (재입학) 대학원의 학생으로서 재학 시 석사는 6학점, 박사는 9학점 이상 이수한 자로서 자퇴 또는 제적된 자에게는 학칙 제13조 1항 의거하여 재입학을 허가 할 수 있다. 단, 징계에 인하여 제적된 자는 재입학 할 수 없다. 재입학생에 대하여는 자퇴 또는 제적 전에 취득한 학점을 인정하고, 재학연한은 자퇴 또는 제적전의 연한에 대한 잔여 학기로 한다.(개정 2010.9.1.)

제7조 (합격사정) 합격사정은 대학원위원회에서 사정을 거쳐 총장의 승인으로 결정한다.

제3장 등록, 휴학, 복학

제8조 (학점등록) ①수업연한 이내에 수료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자로서 그 학점이 3학점 이하일 경우에는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4조 7항 2호」에 의거하여 등록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1.4.1.)

②재입학생 중 학점등록 대상자는 제1항에 의한 학점등록금과 재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학점등록은 해당학기 등록 기간 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9조 (수료자 등록) 대학원 수업연한을 마치고 논문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여 수료한 자는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논문을 제출 할 경우 재학생 등록금 6% 금액을 등록하여야 한다.

단) 석사학위 과정 수료생 중 논문대체 선택 할 경우에는 논문대체요건 9학점을 이수 하여야 하며, 수료등록 금액은 학점당 재학생 등록금 6%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8.8.1.)

제10조 (논문등록) 학위논문의 심사를 위해 논문등록(수강신청 및 심사비 납부)을 하여야 한다.

제11조 (등록반환) 등록금의 반환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 2항」에 의거 하여 반환한다.(개정 2011.4.1.)

제12조 (휴학) ①휴학기간은 1회에 2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학기간 중 석사학위과정은 2회, 박사학위과정은 3회에 한한다. 단, 군복무를 위한 입영 및 임신과 출산, 육아로 인한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0.9.1.,2017.1.1.)

②신입생은 병역 또는 질병 및 임신과 출산, 육아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학 학년도 1학기 휴학을 허가 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1.1.)

제13조 (휴학 구비서류) 일반휴학을 제외한 특별한 휴학일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 하여 제출한다.

①특별한 사유일 경우 : 휴학사유서

②질병·사고일 경우 : 병원 진단서(개정 2014.9.1.)

③병역의무 : 입대(복무)확인서

④임신과 출산, 육아로 인한 휴학 : 임신과 출산 및 육아 등 관련 사실을 입증할 증빙서류 첨부 (신설 2017.1.1.)

제14조 (휴학명령) 학기 개강 후 5주 이내 등록을 못할 경우 휴학을 명할 수 있다.

제15조 (등록인정) 등록을 필한 학생이 수일일수 1/3 이전에 휴학할 경우 복학 시 등록금 전액을 대체 인정하며, 중간고사 이후의 휴학은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입대 및 질병, 사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휴학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6조 (복학) ①휴학한 자가 복학하고자 할 때에는 학기 초 소정의 기간 내에 복학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복학원이나, 휴학연기원의 제출이 없으면 학업 계속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제적 한다.

제4장 교육과정 · 학점·수료

제17조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①교육과정은 학과단위로 편성하여 대학원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개설한다.

②교육과정의 편성에 있어 교과목은 3학점 단위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기초공통 과목 및 전공실기 과목은 2학점으로 할 수 있다.

제18조 (교육과정의 구분) 교과목은 기초공통, 전공, 선수 과목으로 구분한다.

제19조 (수료 학점) 석사학위과정에는 24학점 이상, 박사학위과정에는 36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개정 2010.9.1.)

제20조 (수강신청 및 정정) ①학생은 등록을 필한 후 소정기일 내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하며, 수강신청을 하지 않고 취득한 성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규정 외에 초과하여 신청한 과목의 취득학점은 무효로 한다.

③수강신청 정정은 소정기일 내에만 가능하다.

제21조 (성적정정) 확정된 성적은 과오처리 이외에는 정정할 수 없다. 단, 과오처리의 경우에는 담당교수가 그 사유서와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한 정정 보고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2(재이수) ① C+이하과목은 재이수를 신청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② 재이수 학점은 기 취득한 성적과 재이수 성적 중 높은 성적을 인정하여 성적표에 기재하고 평균평점 계산에 반영한다. (신설 2022.2.1.)

제22조 (휴학자의 성적인정) 수업일수 3분의 2가 경과한 후 군 입대 휴학하는 학생에 대하여 본인이 희망할 경우 담당교수는 해당 학기 성적을 인정하여야 한다.

제5장 전공변경

제23조 (전공변경) ①동일학과 내에서 세부전공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1학기를 수료한 자에 한하여 학과 교수회를 거쳐 첫 학기말에 전공 변경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전공변경을 한 경우 이수학점 인정은 변경 전 전공의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과목에 한한다.

제6장 선수과목

제24조 (선수과목 이수대상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의 학생 중 하위과정과 비동일계 학과에 입학한 자는 수료학점 외에 선수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개정 2010.9.1.)

제25조 (선수과목 이수학점) ①이수대상자는 입학 후 4학기 이내에 전공학과의 기초가 되는 하위과정의 전공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며, 성적 표시는 P(합격), NP(불합격)으로 한다.(개정 2010.9.1.)

②선수과목 이수학점은 6학점(예능계열은 4학점)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9.6.1.)

제26조 (선수과목 신청) 선수과목 신청은 학기당 6학점을 초과 신청할 수 없으며, 그 성적이 B학점 미만일 때에는 재수강하여야 한다.

제27조 (선수과목 결정) 선수과목의 결정은 해당 학과 교수회의에서 하며 학과장은 이수해야 할 과목을 매 학기 초 학생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제7장 자격시험

제28조 (목적) 본 시행세칙은 본 대학원 학칙 제9장에서 규정한 자격시험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9조 (응시자격) 학위과정 자격시험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어시험 : 2학기 이상 정규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은 외국어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개정 2014.9.1.)

2. 종합시험 : 석사학위과정은 3학기 이상, 박사학위과정은 4학기 이상 등록하고 각 학위과정의 수료를 위한 최저 이수학점을 취득한 자로서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개정 2010.9.1.)

제30조 (응시절차)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정기일 내에 응시원서와 수험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 (시험시기)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은 매 학기 초에 실시한다.

제32조 (시험시간)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은 각 과목마다 60분을 원칙으로 한다.

제33조 (시험과목) 자격시험의 과목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어시험 : 외국어시험의 과목은 영어로 한다.(개정 2014.9.1.)

2. 종합시험

①신학과 : 학과에서 지정하는 과목으로 석사학위과정은 전공 3개 과목, 박사학위과정은 전공 4개 과목으로 한다. 단, 박사학위과정은 전공에 따라 전공언어를 추가 할 수 있다.
(개정 2010.9.1.)

②삭제<2010.9.1.>

③사회복지학과 : 학과에서 지정하는 전공 3개 과목

④영어영문학과 : 학과에서 지정하는 전공 3개 과목

⑤음악학과 : 전공실기(졸업연주회)

제34조 (출제범위)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의 출제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어시험 : 외국어의 능력이 전공분야의 연구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수준이 되는가를 시험한다.

2. 종합시험 : 전공영역과 연구방법에 대한 기초지식과 능력을 시험하는 범위로 한다.

제35조 (합격인정) 자격시험의 합격인정 점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어시험 : 외국어시험 과목에 대한 성적은 석사학위과정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박사학위과정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인정하며, 공인된 기관에서 실시한 어학능력시험(TOEFL, TOEIC, TEPS)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은 자는 외국어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TOEFL(213점 이상), TOEIC(735점 이상), TEPS(645점 이상)(개정 2010.9.1.)

2. 종합시험 : 석사학위과정은 각 교과목마다 100점 만점에서 60점 이상, 박사학위과정은 각 교과목마다 100점 만점에서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하며 과목별 합격을 인정한다.(개정 2010.9.1.)

제36조 (재응시) 자격시험에 불합격한 자는 다음 학기에 재 응시 할 수 있다.

제8장 학위청구논문

제37조 (학위청구논문 절차) ①학위청구논문 절차는 다음과 같이 거쳐야 한다.(개정 2010.9.1.,2017.1.1.)

1. 석사학위과정 논문

- 1)논문지도교수 선정
- 2)논문연구계획서·연구윤리서약서 제출 및 논문연구계획서 발표(기초연구 발표)
- 3)논문발표 및 심사
- 4)논문지도보고서 및 심사결과보고서 제출
- 5)논문 제출
- 6)표절검사 결과 확인서 제출

2. 박사학위과정 논문

- 1)논문지도교수 선정
- 2)논문연구계획서·연구윤리서약서 제출
- 3)논문연구계획서 발표(기초연구 발표)
- 4)논문발표 및 심사
- 5)논문지도보고서 및 심사결과보고서 제출
- 6)논문 제출
- 7)표절검사 결과 확인서 제출

② 논문대체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2학기 말에 논문대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학기부터 최종학기까지 이수한, 수료학점 초과 9학점을 인정한다(신설 2018.8.1., 개정 2020.1.1.)

제38조 (논문지도교수 선정) 논문지도교수는 석사 2학기차, 박사 3학기차에 학생의 의사를 반영하여 희망지도교수에게 확인을 받아 학과에 ‘학위논문지도교수 신청서’ 제출 후 연구하고자 하는 전공분야와 동일한 분야의 전임교원 중에서 선정한다.(개정 2017.1.1.)

제39조 (논문지도교수 자격) 논문지도교수는 본교 전임교원으로 해당학과 해당전공분야 교원으로 우선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1.10.1.)

제40조 (논문지도교수 변경) 논문지도교수는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휴직, 안식년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논문지도교수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1조 (논문지도교수의 지도 학생수) 논문지도 학생수는 전공별로 5명을 초과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4.9.1.)

제42조 (논문지도 기간) 논문지도 기간은 석사학위과정은 1학기 이상, 박사학위과정은 2

학기 이상 지도를 받아야 한다, 논문지도기간은 논문연구계획서를 제출한 학기와 학위청구 논문발표 학기를 포함한다.(개정 2010. 9. 1., 개정 2011.10.1.)

제43조(논문지도 보고서) 논문지도교수는 논문심사 완료시 대학원장에게 논문지도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 (논문연구계획서 제출) ①논문연구계획서는 논문지도교수와 학과장이 그 내용의 적합성을 심사한 후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교무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논문연구계획서 제출 시기는 석사학위과정은 3학기 이상, 박사학위과정은 4학기 이상으로 지도교수 및 학과장을 경유하여 논문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0.7.19.)

제44조의2 (논문연구계획서 발표) 박사학위과정 학생은 논문연구계획서를 다음과 같이 발표 하여야 한다.(신설 2010.9.1.)

1. 논문심사위원회(논문연구계획서 심사위원회는 논문심사위원회와 동일인으로 함) 참석 하에 공개 발표를 하여야 한다.
2. 논문심사위원장은 발표내용을 평가하여 적합여부를 판정한다.
3. 논문심사위원장은 논문심사결과보고서를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5조 (논문제목 변경) 논문연구계획서 제출 이후 논문지도 진행 중에 논문제목을 변경할 경우에는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변경원을 교무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6조 (논문심사위원) ①논문 심사를 위하여 학위논문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②삭제<2010.9.1.>

③논문심사위원장은 논문심사의 진행을 담당하고 논문심사 경과를 대학원장에게 보고한다.

④심사위원은 원칙적으로 변경 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논문심사위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학과 교수회를 거쳐 대학원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7조 (논문심사위원 임무) 논문심사위원은 논문 제출자의 논문발표 요지, 논문내용, 참고 문헌 등을 심의하여 학술적 타당성이 체계적으로 전개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논문의 내용이 타인에 의해서 발표된 적이 있는지, 발표된 부분이 논문에 삽입되어 있는지 등을 면밀하게 심사하여야 한다.

제48조 (논문발표 신청) 논문제출 자격을 갖춘 자로서 논문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추천을 받아 소정의 심사료와 함께 논문발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9조 (논문발표 시기 및 장소) 논문발표 시기와 일정 및 장소는 학과장이 학과 교수회를 거쳐 정한 후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0조 (논문발표) ①논문발표는 논문심사위원, 학과교수 및 전공분야 연구자들 앞에서 공개 발표를 하여야 한다.

②논문발표자는 발표요지(석사학위과정 : A4용지 10매 내외, 박사학위과정 : A4용지 20매 내외)를 작성하여 참석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개정 2010.9.1.)

제51조 (논문심사) 석사학위청구논문은 예비심사, 학위청구논문발표(구술심사 포함) 2회 이상, 박사학위청구논문은 예비심사(1차, 2차), 학위청구논문발표(구술심사 포함) 3회 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0.9.1., 개정 2011.10.1.)

제52조 (예비심사) ①논문발표자는 예비심사 1주일 전에 심사용 논문(석사 3부, 박사 5부)을 지도교수에게 승인받아 논문심사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9.1.)

②예비심사가 끝나면 각 논문심사위원은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작성하여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예비심사 시기는 매년 5월과 10월 중으로 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학과장이 학과 교수회를 거쳐 정한 후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0.9.1.)

제53조 (학위청구논문발표) ①논문발표자는 학위청구논문발표 전에 예비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수정 보완한 심사용 논문(석사 3부, 박사 5부) 및 국문초록을 첨부하여 논문심사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9.1., 개정 2011.10.1.)

②학위청구논문발표가 끝나면 각 논문심사위원은 학위청구논문발표 결과보고서와 논문지도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10.1.)

③학위청구논문발표는 반드시 구술심사를 병행하여야 하며, 학위청구자의 자질과 능력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1.10.1.)

④학위청구논문발표 시기는 매년 6월 초순과 12월 초순으로 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학과장이 학과 교수회를 거쳐 정한 후 대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0.9.1., 개정 2011.10.1.)

제54조 (논문심사 평가) 논문심사는 구술심사를 포함하여 A,B,C,D 등급으로 평가하며, 논문의 합격은 석사학위과정은 논문심사위원 2인 이상, 박사학위과정은 4인 이상 B(80점 이상)이상의 평가로 결정한다.(개정 2010.9.1.)

제55조 (완성논문 제출) 논문발표자는 논문심사에 합격하면 정한 기간 내에 완성논문 1부를 교무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논문은 대학원위원회에 상정하여 학위수여 여부를 심사한다.

제56조 (논문 재심사) 논문심사에 불합격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해당학기에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재심사 받을 수 있다.

제57조 (논문작성 원칙) 학위논문은 국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학문의 성격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외국어로도 작성 할 수 있다. 단, 외국어의 기준은 영어로 한다.(개정 2011.10.1.)

제58조 (논문양식 및 체계) 논문은 양식에 맞추어 작성하여야 하며, 그 양식 및 체계는 본 대학원 학위논문규정에 따른다.

제59조(논문 제출) 완성된 학위논문 석사4권, 박사6권과 디스켓(혹은 CD)을 교무팀에 제출하되 그 중 3권은 논문심사위원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3.3.1.)

제9장 연 구 생

제60조 (연구생) 학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학할 희망하는 자를 위하여 모든 학과에 비 학위과정으로 연구생을 둘 수 있다.

제61조 (입학자격) 입학자격은 대학원 정규 석사학위과정에 준한다.

제62조 (수학연한) 수학연한은 1년으로 하며 1학기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63조 (수강신청) 수강신청학점은 6학점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64조 (수료학점) 수료학점은 12학점으로 한다.

제65조 (수료증명서) 수료자에게는 수료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66조 (학점인정) 수료생이 대학원 관련학과 석사학위과정에 입학할 경우에는 수료학점 중 9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제10장 학 위 수 여

제67조 (학위수여 자격) 다음의 요건을 갖춘 학생은 학위수여 자격을 가진다.

1. 학칙 제22조에서 정한 과정 이수에 필요한 수료 및 이수학점을 모두 취득한 자
2. 취득학점의 총 평점평균이 3.0(B⁺) 이상인 자
3.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
4.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5. 석사학위과정은 4학기 이상 정규등록하고 1학기 이상, 박사학위과정은 6학기 이상 정규 등록하고 2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은 자(개정 2010.9.1.)
6. 논문 심사에 합격한 자 또는 석사학위논문 대체 요건 9학점을 이수하여 인정을 받은 자 (개정 2018.9.28.)

제68조 (학위수여자 사정) 대학원장은 학위수여 대상자를 대학원위원회에 회부하여 학위 수여자 사정을 행한다.

제69조 (학위수여) 대학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은 학위수여자 사정에 통과된 자에게 다음과 같이 학위를 수여한다.

과정 \ 구분	학과	학위 명	비고
석사과정	신학과	신학석사	Th.M.
	사회복지학과	문학석사	M.A.
	영어영문학과	문학석사	M.A.
	음악학과	음악학석사	M.Mus.
박사과정	신학과	철학박사	Ph.D.

제69조2 (명예박사학위 수여) ①학칙 제42조의 3의 ①에 의한 후보자를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별지 서식에 의한 명예박사학위기를 수여한다.(신설 2011.4.1.)

②명예박사학위수여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신설 2011.4.1.)

제70조 (학위수여 시기, 양식) 학위수여 시기는 연 2회로 하며 양식은 별지와 같다.
(양식 별지 개정 2022.2.1.)

제11장 보 칙

제71조 (준용사항) 세칙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대학원통합학칙 및 대학교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72조 (내규 등) 세칙이 위임한 사항이나 대학원 특성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대학원에서 별도의 내규 및 지침 등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 ①본 학칙 시행세칙은 대학원 통합학칙제정으로 인하여 개정하며, 2009학년도부터 적용한다.
- ②(시행일) 이 개정세칙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③이 학칙 시행세칙으로 대학원 재학생에게 불리하게 될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구 학칙시행세칙을 적용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개정세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신학과 박사학위과정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2011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개정세칙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개정세칙은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개정세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개정세칙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개정세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시행일) 본 개정세칙은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석사학위논문 대체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내규 이전의 수료생도 적용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개정세칙은 2018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시행일) 본 개정 학칙시행내규는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본 개정 학칙시행내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본 개정 학칙시행내규는 202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1. 석사학위(개정 2022.2.1.)

석 제 호

학 위 기

성 명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교 대학원 학부(학과)(전공) 석사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여 아래의 논문을 제출하고 대학원위원회의 심사에 통과하여
○○학 석사(영문학위명)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함.

논문제목 :

년 월 일

대신대학교 대학원장 (학위명) ○ ○ ○ (인)

위의 인정에 의하여 ○○학 석사의 학위를 수여함.

대신대학교 총 장 (학위명) ○ ○ ○ (인)

학위등록번호 _____

2. 박사학위(개정 2022.2.1.)

박 제 호

학 위 기

성 명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교 대학원 학부(학과)(전공) 박사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여 아래의 논문을 제출하고 대학원위원회의 심사에 통과하여 ○○학 박사(영문학위명)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함.

논문제목 :

년 월 일

대신대학교 대학원장 (학위명) ○ ○ ○ (인)

위의 인정에 의하여 ○○학 박사의 학위를 수여함.

대신대학교 총 장 (학위명) ○ ○ ○ (인)

학위등록번호 _____

3. 명예박사학위

명박 제 호

학 위 기

성 명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에 크게 공헌을 하였으므로
본 대학교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명예신학박사학위를
수여하고자 이에 추천함.

년 월 일

대신대학교 대학원장 (학위) ○ ○ ○ 인

위의 인정에 의하여 명예신학박사학위를 수여함.

대신대학교 총장 (학위) ○ ○ ○ 인

학위등록번호 : 대신대 ○ ○ ○ ○ (명박) ○ ○ ○ 호